

atget

GLOBAL EXPORT
TRENDS

2014 **OCT**
K-06

주요국의 인증제도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I. 주요국의 인증제도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II. 국제 금융시장
- III.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주요국의 인증제도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I . 주요국의 인증제도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 | |
|------------------------------------|----|
| 1. 인증제도의 필요성 | 5 |
| 2. 중국의 인증제도: 유기농제품, 유제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6 |
| 3. 일본의 식품 관련 인증제도 | 29 |
| 4.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 | 44 |
| 5. 주요국 인증제도의 시사점 | 50 |

II . 국제 금융시장

- | | |
|------------|----|
| 1. 국제 외환시장 | 57 |
| 2. 국제 상품시장 | 58 |

III .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 | |
|------------------|----|
|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63 |
|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68 |

I . 주요국의 인증제도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작성자: 곽성일, 이승은, 김은지, 신민금

1. 인증제도의 필요성
2. 중국의 인증제도: 유기농제품, 유제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3. 일본의 식품 관련 인증제도
4.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
5. 주요국 인증제도의 시사점

- 최근 각국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기술상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하는 바, 본고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최근 중국에서는 멜라민 파동, 가짜식품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본고는 △ 인증제도(유기농인증, 유제품 GMP, 유제품 HACCP) 현황 및 관련 정책 △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기관 소개 △ 인증 체계 및 인증 절차 △ 인증제도 기취득 기업 사례 및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인증제도는 상호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 해당 인증을 획득하여도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중국 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의 식품 관련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 일본 농식품 인증제도의 특징 △ 인증제도의 효과 △ 인증체계 및 인증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농식품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 외에도 협회 주도의 다양한 자발적 인증제도가 활성화된 점이 특징적이며, 이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일본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약 2.5억 명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중산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류로 인해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인도네시아의 국가표준인증제도(SNI)뿐만 아니라 할랄 인증제도, 수입식품등록제도(ML)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요약하면 각국이 상이한 인증제도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이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 취득을 활성화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인증제도의 필요성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제품의 품질을 정부나 제3자가 보증하는 인증제도 도입은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에 소비자가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 정부 인증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비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인증품목 생산자의 매출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인증 취득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시장 비효율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된 품질 표시는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나, 정부 인증은 이를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한다.
- 인증제도는 수출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식품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식품을 수출할 때도 수입국에서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식품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필요성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바, 본 연구는 주요국의 식품 인증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인증제도: 유기농제품, 유제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가. 중국 식품 관련 인증제도의 분류와 구성

● 최근 중국에서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파동, 가짜식품 등 식품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상하이 푸시식품(上海福喜食品)이 유통기간이 지난 육류를 사용하고(2014.7)¹⁾ ‘와하하’ 생수병에서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2014.9)²⁾ 식품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식품안전 사고 이후, 중국정부는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국가인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에 중국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을 국무원 소속에서 분리·승격했다.
- 이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구입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안전이 의심되는 중국산 식품보다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식품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 중국의 인증제도는 크게 ‘강제성 국가표준’ 혹은 ‘강제인증제도(强制性標準)’와 ‘비강제성 국가표준(推薦性標準)’으로 구분된다.

- ‘강제성 국가표준(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은 ‘수입상품 안전품질 허가제도(进口商品安全质量许可制度)’와 ‘전기공업제품안전 인증제도(电工产品安全认证制度)’로 구분되고 기업은 유통할 상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한준호, 2014. “식품안전문제 심각한 중국, 외국기업 진출 잇따라.” 아주뉴스 2014년 8월 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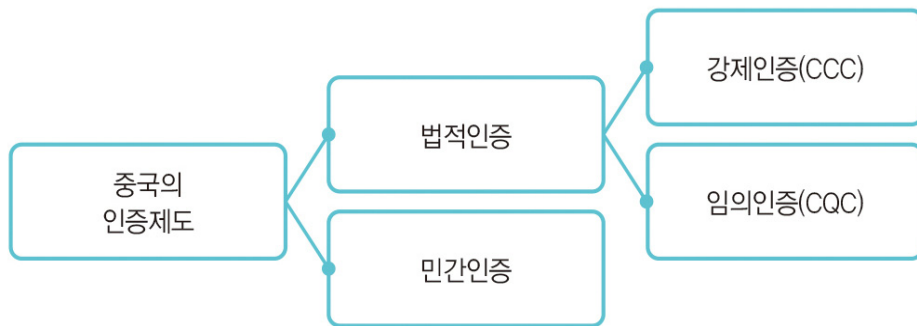
<http://www.ajunews.com/view/20140828112204968> (검색일: 2014.9.19).

2) 서봉국, 2014. “‘세균 1500배’ 중국 생수 안전 비상.” YTN 2014년 9월 5일

http://www.ytn.co.kr/_ln/0104_201409052247295411 (검색일: 2014.9.19).

- 중국 국가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CQC)에서 담당하는 '비강제성 국가표준'을 '임의인증'이라고 칭하며, 국가 절약환경보호형 자동차(国家节能环保型汽车), 사료제품(饲料产品), 유기농제품(有机产品), 우수농업규범인증(良好农业规范认证, GAP인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법적근거유무에 따른 인증제도 구분 ■



출처: 국가인감위원회(<http://www.cnca.gov.cn/>), 국가품질인증센터 (<http://www.cqc.com.cn/chinese/index.htm>) 홈페이지 종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의 식품 인증제도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GAP 인증, 유기농인증(有機認證), 식품 품질(食品質量), 녹색시장, 사료제품, 녹색식품³⁾, 무공해 농산품⁴⁾, HACCP 인증, 유제품 HACCP, 유제품 GMP 등이 있으며, 생산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관리체계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식품 인증제도를 분류할 수 있다.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및 허가제도로는 식품안전관리체계, 식품품질(食品质量), 유제품 GMP, GAP 인증이 있다.
 - HACCP 인증, 유제품 HACCP 등은 위해요소에 관한 제도이며, 유기농인증, 녹색시장, 녹색식품, 무공해농산품, 사료제품 등은 친환경 및 특화상품에 관한 제도이다.

3)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中國綠色食品發展中心)는 유일한 녹색식품 인증기관이다.

4)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센터(農業部農產品質量安全中心)는 유일한 무공해농산품 인증기관이다.



■ 생산단계에 따른 중국 식품 인증제도 구분 ■

단계	인증제도
생산	GAP, 친환경농식품 인증, 유기농제품인증
가공	HACCP, 유제품 HACCP, 유제품 GMP
유통·판매	GHP, 삼녹(三绿)프로젝트(绿色消费, 绿色市场, 绿色通道), QS마크 부착
소비	식품리콜제도(食品召回管理)

출처: 관련 자료 종합하여 저자 작성.

여기서는 비강제성 국가표준에 속하는 식품 인증제도 중 유기농제품과 유제품 HACCP, 유제품 GMP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선정이유 및 배경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4월 발효된 <유기농제품 품질인증관리방법>⁵⁾(이하, <관리방법>)은 기존 관리방법에 비해 인증대상 및 범위를 축소한 반면,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 기존 <관리방법>은 유기전환식품을 인증대상에 포함했으나, 새로 발효된 <관리방법>은 전환과정 및 내용에 대한 불투명성,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엄격화 등을 이유로 인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유제품 HACCP 및 GMP는 우리나라의 HACCP, GMP와 유사하지만 ‘유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 중국의 유기농제품 인증제도

중국의 ‘유기산품(有機產品)’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유기농제품’⁶⁾을 일컫는 것으로 (이하 ‘유기농제품’), 중국 국가인감회가 총괄관리하고 있다.

5)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3/201311/t20131120_387865.htm(검색일: 2014.9.11).

6)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윤, 2014, “유기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활성화 전략: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T Global Export Trends, p.16 참고.

1) 관련 법규

- 유기농제품 관련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 유기농제품 인증실시규칙, 유기농제품 국가표준(GB/T 19630-2011) 등이 있다.

【 유기농제품 관련법규⁷⁾ 】

법규	법령번호	시행일시	제정목적 및 특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 认证认可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0호(中华人 民共和国国务院 令第390号)	2003.11.1	인증인가활동의 규범 확립, 제반 서비스의 품질·관리수준 향상, 경제사회발전 촉진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 (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국무질검총국 제155호령 (国务院检总局 第155号令)	2014.4.1	중국 내 유기농제품 인증, 생산, 가공, 판매활동 규제 및 관리감독
유기농제품 인증실시규칙 (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	2011년 제34호 공고(2011年第3 4号公告)	2011.12.2	유기농제품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및 기본요구 전개
유기농제품 국가표준(有机产品国家标准)	GB/T 19630-2011	2012.3.1	유기농제품 생산, 가공, 표기, 판매, 관리에 요구되는 기술수준에 부합
유기농제품 인증목록(有机产品认证目录) ⁸⁾		2012.3.1	유기농제품으로 인증되는 재료군 명시

출처: 저자 정리.

- 중국에서 시행중인 <관리방법>은 2013년 4월 23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승인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관리방법>은 유기농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소비 등 전반에 걸친 법령으로, 총칙, 인증 시행, 유기농제품 수입,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감독관리,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註冊管理部 편집부. N.d. “유기농제품 인증 지식 Q&A(有機產品認證智識問答),” p.23.

8) 2014년 7월 24일 발표된 <유기농제품인증 증보목록(有機產品認證增補目錄)> 참고.



- 취득한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관리 방법〉 시행은 중국 내 생산·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반영하고 유기농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기농제품의 범위가 축소되고, 관리·감독 및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즉, 유기농배합원료함량이 95% 이상⁹⁾인 가공제품 가운데 ‘유기’라는 표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획득이 가능해졌다¹⁰⁾.
- 둘째, ‘유기농전환상품’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과거 ‘유기농전환상품’은 일반상품으로 분류한다.
- 셋째, 법령에 유기농제품 수입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증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 중국에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나 지역의 유기농제품 담당 기구는 제품인증의 상호 동등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의 업체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제품이 유기농제품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반드시 국가인감회가 인정한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¹¹⁾.
- 넷째, 해외에서 유기농마크를 획득한 수입 유기농제품일지라도 중국 국가인감위가 소집한 유기농제품 인증위원회를 통해 중·영문이 병기된 중국 유기농마크를 다시 획득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 유기농제품으로 인증이 되었다는 것은 제품이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 및 재료로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CCIC Korea 관련 담당자 인터뷰).

10) http://www.zj.xinhuanet.com/newscenter/jiankang/2014-04/04/c_1110104349.htm(검색일: 2014.9.11).

11) 유빛나. 2014. “중국, 4월 1일부터 유기농제품 인증 개정안 시행.” Kotra 광주우무역관. 2014년 2월24일.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SCH_TYPE=SCH_SJ&MENU_CD=M10115&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10806&UPPER_MENU_CD=M10114&BBS_ID=10&SCH_VALUE=&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검색일: 2014.9.11).

Ⅱ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有機産品認證管理辦法有)> 2014년 개정 전후 비교표 Ⅱ

	기존	현재
공포· 시행일자	2004년 11월 5일 공포, 2005년 4월1일 시행, 유기농제품 국가표준 (有机产品国家标准) G B/T 19630.1~19630.4-2005	2013년 4월 23일 공포, 2014년 4월 1일 시행, 질검총국령(质检总局令) 제155호
특징	생산, 가공, 표지 및 판매, 관리체계	인증실시, 유기농제품 수입, 인증증서 및 마크, 감독관리 등
대상	유기농제품, 유기전환상품	유기농제품

출처: 기존법안에 관한 자료는 전형진 편저(2012),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33 참고. 기타 내용은 관련 법안 및 홈페이지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유기농제품 인증목록>은 제품을 37개 종류 127개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 식물류(곡물, 야채, 과일 및 견과류, 두부제품 및 기타 유류작물, 화훼류, 향신료, 설탕류, 기타작물, 종자류 및 번식재료, 중약재료), 가축류(생체동물, 축산물 및 부산물), 수산물(활어, 갑골류 및 무척추동물, 수생 척추동물, 수생식물), 육제품 및 가공육제품, 가공수산물, 가공채소 및 저장채소, 과즙 및 채소즙, 가공 및 저장 과일 및 견과류, 식물성 가공유, 기타 유제품, 곡물분, 전분 및 전분 제품, 가공사료, 베이커리류, 면류 및 가공면류, 기타(차, 대용차, 커피, 조미료, 식물성 중약가공제품), 술(과일주, 발효주, 맥주 등), 천연직물, 의류 등 37개 종류 127개 제품으로 나뉜다.
- 2014년 7월 24일 국가인감위에서 <유기농제품인증 증보목록>을 발표했으며, 추가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유기농제품인증 증보목록(有機產品認證增補目錄)>¹²⁾ Ⅱ

범위	번호	제품명칭	범위
곡류	6	보리(大麦)	쌀보리(青稞) 추가
과일채소류(蔬菜)	13	녹색잎채소(绿叶蔬菜)	국화채(菊花菜), 즈채(戴儿菜) 삭제
	22	식용균류(食用菌类)	북동충하초(北虫草) 추가
과일·견과류(水果与坚果)	37	기타견과류(其它坚果)	호주 견과류(澳洲坚果) 추가
향신료작물제품(香辛料作物产品)	41	향신료작물제품(香辛料作物产品)	고명(桔茗) 삭제
기타식물류(其他类植物)	46	야생채집식물(野生采集的植物)	산포도(山葡萄), 붉은 산딸기(红树莓), 설국(雪菊), 罗布麻, 상수리나무 종자(橡籽), 가시오갈피(刺五加) 추가, 화서는매화 잎미나리(华西银腊梅叶芹菜)는 화서는매화멧미나리(华西银腊梅山芹)로 변경, 광둥차이(广东菜), 고양이발톱(猫爪子), 원숭이다리(猴腿) 삭제
종자 및 번식작물류(种子与繁殖材料)	48	종자 및 번식작물(种子与繁殖材料)	본 목록에 포함된 종자·번식작물류만 해당됨
중약작물류(植物类中药)	49	중약작물류(植物类中药)	교고남(绞股蓝), 당귀(当归), 단삼(丹参), 상당 인삼(党参), 황기(黄芪),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 扯根菜) 추가, 지골피(地骨皮) 삭제
동물제품(动物产品或副产品)	69	동물부산물(动物副产品)	동물내장(动物内脏) 삭제
갑각류 및 무척추동물(甲壳与无脊椎动物)	73	게류(蟹类(只))	참게(绒螯蟹)로 변경
육제품 및 육류가공제품(肉制品及副产品加工)	78	육류가공제품(加工肉制品)	50-61 동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을 육제품으로 분류, 50-61 중 동물내장, 골격, 피, 껍질, 유지류를 도살가축제품(用屠宰副产品)으로 분류
가공수산물(水产品加工)	79	냉동선어(冷鲜鱼)	전복(鲍鱼), 새우(虾) 삭제
	81	기타수산가공제품(해초류 포함)	전복(鲍鱼), 새우(虾) 추가
가공·보존한 과일 및 견과류(加工和保藏的水果和坚果)	89	보존법을 사용한 과일·견과류(保藏的水果和坚果)	가공·보존 과일 및 견과류(保藏的水果和坚果)를 23-37을 원료로 하는 생산작물인 경우에만 국한시킴.
	93	베이킹·가열한 견과류(烘焙或炒的坚果)	호주 견과류(아몬드)(澳洲坚果)(仁) 추가
	94	기타방법·보존법을 사용한 과일·견과류(其他方法加工及保藏的水果和坚果)	과일분말(水果粉)을 견과일제품(水果干制品)으로 변경(생산·식물류(23-34)을 가공원료로 하는 경우로 국한시킴.)

12) 이 목록은 간체자로 표기함.

	번호	제품명칭	범위
식물성 가공유 (植物油加工)	95	식용식물기름 (食用植物油)	식용식물기름(1-43, 45-49에 해당되는 제품 및 식물의 기타 부분을 가공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공처리한 액체분유·크림 (经处理的液体奶或奶油)	97	가공처리한 분유(액체)(经处理的液体乳)	박테리아 살균유(巴氏杀菌乳), 멸균유(灭菌乳), 버터(黄油), 휘핑크림(奶油)을 62-65에 해당되는 제품을 가공원료로 하는 경우로 국한시킴.
곡물제분(谷物磨制)	104	기타곡물분쇄가공제품(其他谷物碾磨加工品)	기타곡물탈곡제품 및 부산물(其他谷物去壳产品及副产品)을 기타곡물분말 제분(其他谷物磨制粉), 기타식물분말 제분(其他植物磨制粉)으로 변경
기타 식품류 (不另分类的食品)	116	저장처리한 식용조류알 및 제품(保藏的去壳禽蛋及其制品)을 저장한 가금알 및 제품(保藏的禽蛋及其制品)으로 변경	
	117	조미료(调味品)	설탕(糖), 간장(酱油), 식초(食醋), 깨소금(芝麻盐), 장(酱), 향신료(香辛料) 추가
	118	중약작물 가공제품류 植物类中草药加工 制品(颗粒/饮片)	오이스터 플랜트(婆罗门参), 토패모(土贝母), 황련(黄连), 판람근(板蓝根), 속서근풀(黄芩), 구등(钩藤), 으름나무(通草), (土荆皮), 백선피(白鲜皮), 지골피(地骨皮(枸杞根)), (石韦), 石南叶, 비파엽(枇杷叶), 감나무 잎(柿子叶), (枸骨叶), 자귀나무꽃(合欢花), 자목련(辛夷), 맨드라미(鸡冠花), 洋金花, 大草寇, 巴豆, 육두구(红豆蔻), (川楝子), 마편초(马鞭草), 까마중(龙葵), (长春花), 선학초/낭아초(仙鹤草), (白英), (洋蒔菜), (海蒿子) 삭제
백주(白酒)	119	백주(白酒)	칵테일(配制酒) 추가(백주를 기본으로 한 경우, 1-49 ¹³⁾ 의 식물을 원료로 생산한 경우만 해당됨)
방직용 기타 천연섬유류(纺纱用其他天然纤维)	126	방직용 기타천연섬유(纺纱用其他天然纤维)	조면(皮棉), 삼베(麻) 추가
의류(服装)	127	방직품(纺织制成品)	방직용 사(纱), 방직용 실(线), 방직용 사 및 가공제품(丝及其制品)을 방직용 사·선 및 가공제품(纱及其制成品), 선及其制成品, 丝及其制成品)으로 변경

주: 수출담당자는 원료명의 중국어를 영문과 대조하여 재확인할 필요 있음.

출처: <유기농제품인증 증보목록>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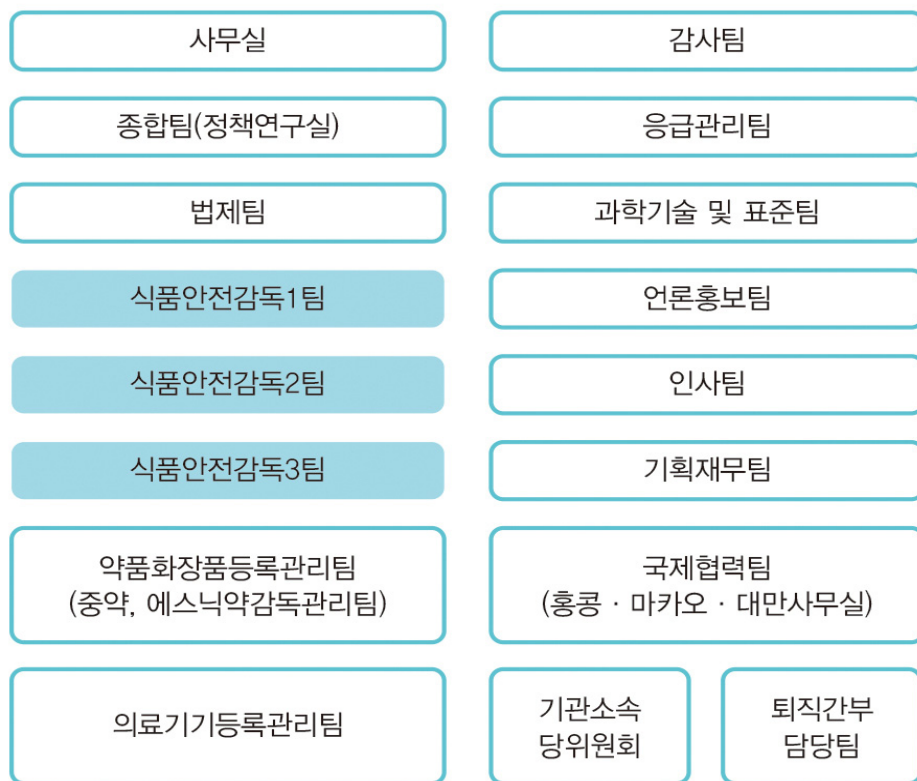
13) 이 표는 '유기농제품인증 증보목록'으로 증보된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제품번호 1~49에 해당되는 제품은 기존의 '유기농제품목록'을 참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기관 소개

- ◆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C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중국 식품의약국’)은 기초식품(식품첨가제, 건강보조식품(保健食品) 포함)·약품(중약(中藥), 민간약¹⁴⁾ 포함)·의료기기·화장품 안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¹⁵⁾.

【 조직구조 】



출처: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0003/>) (검색일: 2014.9.11).

14) 영어로는 ‘ethnic medicine’으로, ‘소수민족의 민간약’을 의미함.

15)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의 초안 작성, 정책규획에 의거한 규정 제정, 식품행정허가 제정 및 실시방법, 관리·감독, 국가약전(國家藥典) 등 약품 및 의료기기 표준 제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리 및 감독 사찰, 위반 규정에 의한 처벌, 식품·의약품 안전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규획 및 조직, 식품·의약품 홍보, 국제 교류·협력, 지방의 식품·의약품 관리·감독·지도,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국무원 및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업무 등을 관장한다.

- 2013년 3월 26일 국무원 소속이었던 식품·의약품관리국(SFDA: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중국 식품·의약품 감독관리국으로 개편하였고 국(局)에서 부(部)로 승격하였다.
- 식품기업의 인증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와 함께 식품안전감독 1·2·3팀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국식품·농산품인증시스템 (<http://food.cnca.cn>)에서 유기농 번호(有機碼查詢)(<http://ogasearch.food.cnca.cn/oga/query/index.jsp>)를 검색할 수 있다. 일련번호는 17자리 수로, ‘유기농번호(有機碼) + 인증기구대표번호(3자리) + 인증마크발행연도(2자리) + 인증마크발행번호(隨機碼,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마크는 중국어와 영어(organic)로 병기한다. 중문과 영문이 혼합되어 있지 않거나 단어 조합이 다른 마크는 중국 정부 및 인가기관에서 인증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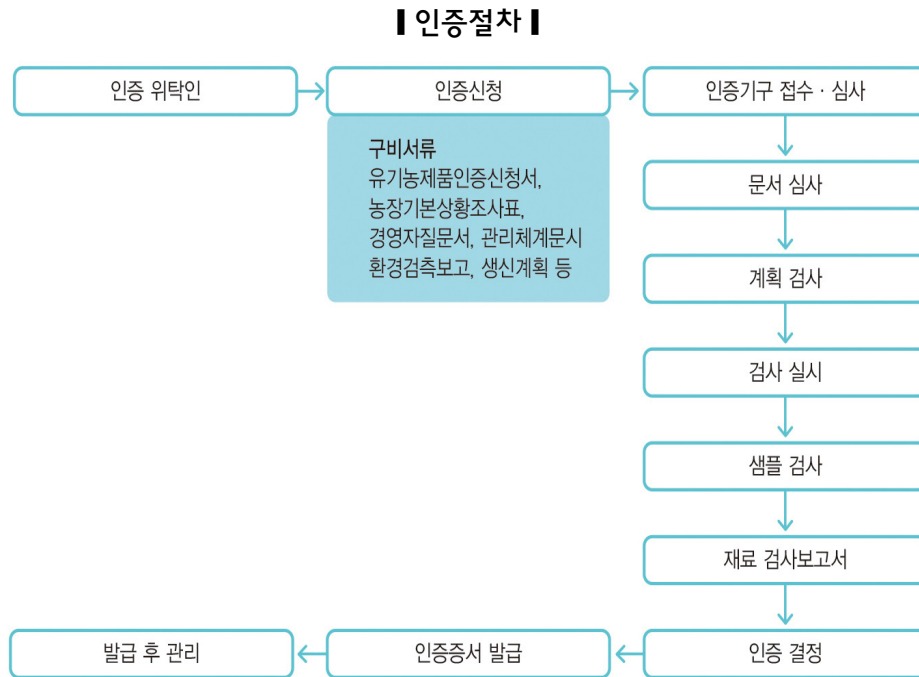


C:100 M:0 Y:100 K:0
 C:0 M:60 Y:100 K:0



3) 인증체계 및 인증 절차

◆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¹⁶⁾.



출처: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註冊管理部 편집부. 2014. “유기농제품 인증 지식 Q&A(有機產品認證智識問答),” p.24를 토대로 재구성.

- 인증 위탁인(신청인)이 구비서류(인증 신청자 기본 정보·자격증서 사본, 유기농 생산가공 및 경영 정보, 생산가공 장소 설명서, 유기농제품 생산가공 계획서, 유기농 생산가공 관리시스템 설명자료 등)를 갖추어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신청서류 및 자료 등을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에는 약 10일이 소요되며, 인증기관위원회 전문가팀이 현장검사를 시행한다. 인증을 신청한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측량 기구를 활용해 표본을 검사한다¹⁷⁾.

16)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2012. “有机产品认证知识普及.” 2012년 2월 24일.
<http://food.cnca.cn/cnca/spncp/zspj/> (검색일: 2014.9.12).

17) International Trade Centre. N.d. “中国有机产品认证.”
http://search.standardsmap.org/assets/media/ChineseNationalOrganicProductsCertificationProgram/Chinese/AtAGlance_CN.pdf (검색일: 2014.9.12).

- 인증비용은 증서의 발급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급 전에는 신청비(2,000위안), 검사비(조사인원 1인당 3,000위안), 허가·등록비·증명서 발급비(3,000위안)가 소요되고, 샘플검사비가 별도로 추가된다. 발급 후에는 감독심사비(조사인원 1인당 3,000위안), 증명서 유지비(5,000위안), 유기농제품마크 사용료(유기농제품 판매액의 0.5%)가 요구된다¹⁸⁾.

Ⅰ 인증비용 Ⅰ

품목	비용	비고
신청비(申请费)	각 제품당 600위안	총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비(检查费)	출장비(差旅费)·숙식비(食宿费)은 인증위탁인이 지불	
샘플검사비 (样品检测费)	검사기관(제3자) 혹은 인증기구에서 대리 수취	
인증등록비 (认证注册费)	2,000위안	5개 이상의 제품일 경우, 제품당 500위안의 등록비가 추가되나, 총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음
증서비(证书费)	사본 1매당 200위안이 추가로 부과됨	
인증마크사용비 (标志使用费)		《中国质量认证中心有机产品认证 标志管理方案》에 의거하여 집행되므로, 중국 품질인증센터 종합업무부에 신청 및 지불
증서변경비 (证书变更费)	- 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위탁인, 생산단위, 가공공장명, 주소변경시 600 위안 소요됨(단,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증서 유효기간 내 증서의 범위 축소 요청시, 변경수수료는 600위안 - 인증위탁인의 사유로 인한 이탈자를 수정할 경우, 200위안 소요됨	
기타비용 (其他费用)	매도증서 수수료(销售证服务费)는 각 기업당 1,200위안	

출처: CQC, 2014. 유기농제품인증비용기준(有機產品認證收費標準).

18) 有机产品认证收费标准(2013) 및 유빛나(2014).



2014년 7월 기준 중국정부가 인가한 유기농식품인증기관은 총 24개가 존재한다. 이 중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대표적인데, 한국에 서울지사, 부산지사, 인천사무소, 울산사무소가 있다¹⁹⁾. 이와 더불어, 독일 BCS Öko-Garantie GmbH가 설립한 후난오우거 유기농인증유한공사가 주목할 만한 인증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기관 지정현황(2014년 7월 기준) ■

소재지	인증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북경	중국품질인증센터 (中國質量認證中心)	010-83886666	www.cqc.com.cn
	팡위안마크인증집단유한공사 (方圓標志認證集團有限公司)	010-88411888-609/610/607	www.cqm.com.cn
	베이징중안쯔환인증센터 (北京中安質環認證中心)		010-58673399-1001
	중스형신(베이징)품질인증센터유한공사(中食恒信(北京)質量認證中心有限公司)		010-52227546, 85226399
	베이징중뤄화사유기농식품인증센터 (北京中綠華夏有機食品認證中心)	010-62131329	www.ofcc.org.cn
	중환리엔허(베이징)인증센터 (中環聯合(北京)認證中心)	010-59205880	www.sepacec.com
	베이징우저우형통인증유한공사 (北京五洲恒通認證有限公司)	010-63180681	www.bjchtc.com
	베이징우위애화사관리기술센터 (北京五岳華夏管理技術中心)	010-63310558	www.bjchc.com.cn
	베이징중허진루어인증센터유한공사 (北京中合金諾認證中心有限公司)	010-88850617	www.co-ic.com
	베이징동팡자이허인증유한책임공사 (北京東方嘉禾認證有限責任公司)	010-69973476	www.jiahe.org.cn
난징	베이징아이커사이얼인증센터유한공사 (北京愛科賽爾認證中心有限公司)	010-62827070, 62827171	www.ecocert.cn
난징	난징귀환유기농산물인증센터 (南京國環有機產品認證中心)	025-85287233/ 025-85287118	http://www.ofdc.org.cn
상하이	상하이써루이스인증유한공사 (上海色瑞斯認證有限公司)	021-61483660	www.ceres-osc.com
저장	저장공신인증유한공사 (浙江公信認證有限公司)	0571-8506794	www.gac.org.cn

19) 서울지사는 02)6393-5800, 부산지사는 051)468-9839, 인천지사는 032)835-6895, 울산사무소의 연락처는 052)266-9895이다.

소재지	인증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항저우	항저우완타이인증유한공사 (杭州万泰認證有限公司)	0571-87901296 87711527	www.wit-int.com
항저우	항저우중농품질인증센터 (杭州中農質量認證中心)	0571-86650449	www.organicteachina.com
광둥	광둥중지앤인증유한책임공사 (廣東中鑒認證有限責任公司)	020-87369002/ 9003/9001	www.gzee.org.cn
헤이룽장	헤이룽장성농산품품질인증센터 (黑龍江省農產品質量認證中心)	0451-87979267	
지린	지린성농산품인증센터 (吉林省農產品認證中心)	0431-85237221	
랴오닝	랴오닝팡위엔유기농식품인증유한공사 (遼寧方園有機食品認證有限公司)	024-86806565, 86808585	www.fofcc.org.cn
랴오닝	랴오닝랴오환유기농식품인증센터 (遼寧遼環有機食品認證中心)	024-31200366	www.lnlhcc.cn
신장	신장생산건설부대환경보호과학연구소 (新疆生產建設兵團環境保護科學研究所)	0991-2819402	
시베이	시베이농림과학기술대학인증센터 (西北農林科技大學認證中心)	029-87091495, 87091496	http://ylofcc.nwsuaf.edu.cn
후난	후난오우거유기농인증유한공사 (湖南歐格有機認證有限公司) (德國BCS Öko-Garantie GmbH設立認證機構)	0731-84637041	www.bcschina.com

출처: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註冊管理部 편집. 2014. “유기농제품 인증 지식 Q&A(有機產品認證智識問答,” pp.16-24.

4) 주요 인증취득기업의 활용 및 시사점

● 신 법규가 시행된 2014년 3~7월에 69개 기업이 유기농제품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이중 외국기업은 3개사에 불과하다.

- GMP Dairy Limited²⁰⁾는 2001년 설립 이후 가공우유를 생산·수출하는 뉴질랜드 기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 Trioni Ltd²¹⁾는 유기농우유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영국 웨일스 기반 기업으로 2013년 3월 중국에 진출하였다. 유기농제품 인증방법이 변경되기 이전에 인증을

20) www.gmpdairy.com 참고.

21) 회사 홈페이지는 www.trioni.com임.



획득한 회사로, 향후 인증 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Alce Nero(有机尼奥)²²⁾는 꿀, 올리브유, 파스타, 토마토소스 등 제품을 생산하는 유기농제품에 특화된 이탈리아 기업으로,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과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기업은 중국 내 3개 지사를 두고 있다(상해지사: 화동지역, 심천지사: 화중 및 화남지역, 북경지사: 화북지역).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중국 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Ⅰ 외국기업의 유기농 인증 취득현황(2014년 3~7월) Ⅰ

	증서 번호	인증 구별	인증 유형	증서 유효기간	인증제품
GMP Dairy Limited	001OP1 300239	가공	유기농	2013.12.23 ~ 2014.12.22	중장년층 유기농 영양분유, 임부용 유기농 영양분유, 수유기 여성 유기농 영양분유, 유기농분유, 학생용 유기농분유, 여성 유기농영양분유, 유기농 전지분유, 유기농 탈지분유
Trioni Ltd	001OP1 300109	가축사료 (畜禽养殖)	유기농	2013.5.21 ~ 2014.9.20	젖소용 사료
	001OP1 300110	가공	유기농	2013.5.21 ~ 2014.9.20	유기농전지우유, 반탈지우유
有机尼奥	001OP1 200109	재배 (种植)	유기농	2014.8.1~ 2015.9.30	올리브, 소맥분, 토마토
	001OP1 200110	가공	유기농	2014.8.1- 2015.9.30	올리브유, 파스타, 토마토소스

출처: 中國質量認證中心. 2014. “有機產品認證獲證企業目錄(201403-06)”; 中國質量認證中心. 2014. “有機產品認證獲證企業目錄(201407).”
<http://www.cqc.com.cn/chinese/xwzx/tzgg/webinfo/2014/08/1407790908549469.htm> (검색일: 2014.9.12).

- <유기농제품 인증획득 기업목록> 검색 및 CCIC Korea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현재 유기농제품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http://www.alcenero.com.cn/>

- 원인으로서는 중국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이 유기농제품인증을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한·중 간 유기농인증 범위 및 종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새로운 <관리방법> 시행으로 인해 인증증서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기준이 강화되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유기농인증 획득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기업들은 자주 개정되는 중국 법규 및 시행규칙을 숙지하고 인증대행기관 및 자문기관과 논의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도로명 주소 전환과 관련하여 서류에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하는 것은 추후 사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통일하는 편이 안전하다.
- 중국에서는 통관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통관시켜 유통할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다. 중국 HACCP 인증제도 및 유제품 관련 인증제도

1) 중국 HACCP 인증제도

● **식품안전보증시스템의 하나인 HACCP²³⁾은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을 뜻하며, 중국은 1988년에 이를 도입하였다.**

- 이 시스템의 목적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식품생산 및 공급과정에서의 생물·화학·물리적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 2002년 4월 국가품질총국은 <HACCP체계 제품목록> 공포를 통해, 캔제품, 수산물, 육류가공품, 급속 냉동야채, 과일채소즙, 급속냉동레토르트식품 수출기업에 HACCP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였다²⁴⁾.

23) 우리나라의 'HACCP(해썹)'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칭하며,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별에서 발생할 우려요소를 관리하는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어육가공품, 냉동수산물, 냉동식품, 과자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 섭취식품, 국수·유당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품목에 의무적용된다. 한국식품연구원(<http://haccp.kfri.re.kr/>) (검색일: 2014.9.19) 참고.

24) 孔令举, 毛鹏军. 2011. "基于HACCP的农产品质量安全监控预警决策的研究." 『农机化研究』. 第5期, p.85; 罗爱军, 成黎. 2011. "解读HACCP体系在我国食品行业的应用." 『有機產品認證獲證企業目錄食品安全導刊』, p.19.

- 2002년 7월 위생부에서는 <식품기업 HACCP 실시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였고, 식품기업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어 농업부는 2003년에 <우수농산품²⁵⁾ 품질안전 추진계획(2003-2007년)>을 발표하고 '우수농산품'의 HACCP 인증 획득을 권고하였다²⁶⁾.

◆ HACCP은 중국에서 아래와 같은 발전단계를 거쳤고 '3원칙·5절차·7원칙'을 기본지침으로 한다.

- 3원칙은 위해식별, 중점관리 위해기준 및 위해 제어장치 확보, 관리·감독체계 확립으로 구성된다.
- 5개의 초기절차는 HACCP 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제품 및 판매특성 파악), 제품 용도 및 고객 파악, 공정흐름도 작성(프로세스 순서도 제작) 및 검토(감별·확인·증명)로 구성된다.
- 운영의 7원칙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체계 수립으로 구성된다.
- 중국 합격평가 국가인가위원회(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이하 CNAS)에서 획득한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지닌다.
 - 이 기관에서 인가한 인증번호는 'CNAS CXXX-Y'와 같다. 'C'는 대표인증기관(Certifier)인 CNAS의 인가를, 'XXX'는 인가번호를, 'Y'는 인증 아이템 번호를 나타낸다. HACCP인증의 경우 'H'로 표기된다.

【 CNAS 인증마크 】



25) 여기서 '우수'농산품이란 우위에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26) 孔寿举, 毛鹏军. 2011.

2) 유제품 관련 인증제도

●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홍콩에서 분유를 사재기함에 따라 2013년 3월 1일 홍콩 특별행정구는 <2013년 수출입(일반) (수정)조례(2013年進出(一般)(修訂)條例)>²⁷⁾를 개정·실시하였다. 이는 홍콩을 떠나는 만 16세 이상 성인이 영 유아용 조제분유를 1.8kg 초과해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위반 시 최고 5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 2년형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 중국 내 유제품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관련 기업이 획득해야 하는 인증제도인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시스템 인증과 유제품 GMP를 일원화하는 추세이다. 즉, 중국 정부는 유제품 HACCP 인증과 유제품 GMP취득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외 다른 HACCP 인증이나 ISO22000인증 신청은 받지 않는다²⁸⁾.
- 분유(영유아조제분말 포함), 기타 유제품(연유, 버터, 치즈, 고체형 제품 등) 등이 유제품 HACCP과 유제품 GMP 인증대상²⁹⁾이며, CQC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3)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시스템 인증

● **2009년 6월 1일 <식품안전법> 발효 이후, 생산, 검사방법 등에 관한 96개 항목을 포함한 유제품 품질안전표준을 제정하고³⁰⁾, 중국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인증 취득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 중국 정부는 유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GB12693 <유제품양호생산규범>, GB/T27342 <HACCP 유제품생산기업 요구> 등을 정리하였고, 2011년에는 유제품기업 QS를

27) http://www.legco.gov.hk/yr12-13/chinese/subleg/brief/25_brf.pdf (검색일: 2014.9.15).

28) 최근 중국 내 규정이 빠르게 변화되므로, 관련규정의 변화를 유의 깊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품질인증센터. 2012. “乳制品认证常见问题.” <http://www.cqc.com.cn/chinese/txrz/haccp/cjw/webinfo/2006/07/1260325221626032.htm> (검색일: 2014.9.21).

29) 제품별 HS Code로 일반적으로 판단 가능하나, 제품의 가공공정에 따라 종합판정을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인증기관 및 관련부서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백미라; CCIC Korea, 2014.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취득 전략.” 신홍시장 기술규제 대응세미나. 2014년 9월 23일 참고).

30) 罗爱军, 成黎. 2011. “解读HACCP体系在我国食品行业的应用.” 『食品安全导刊』, p.19.

도입하였고 QS심사·결정시 HACCP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 유제품 생산업체 HACCP시스템인증은 해당 기업의 자체 품질안전 관리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유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 인증기관은 국가인감위원회로, 이 위원회가 비준한 12개월 이내에 국가인감관리위원회에 유제품기업 HACCP 인증활동에 부합하는 GB/T22003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사 및 인증기구 요구>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인증관련 규범은 GB/T 27341 <HACCP 식품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GB/T 27342 <HACCP 유제품생산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등이 있다.

◆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인증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행정관리부문 혹은 관련기관에 등록된 법인자격을 획득해야하고 관련 법규·법령의 행정허가문서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의 제품 표준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생산·경영하는 제품은 중국의 관련 법규, 식품안전 표준,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 신청인이 구비해야할 서류³¹⁾는 인증 신청, 법률지위증명문서 사본, 유관법률법령의 행정허가문서 사본, 조직기구 코드증서 사본, HACCP 신청문서, 조직기구표, 직책설명 및 기술인력 목록, 공장지역 위치도 및 평면도, 가공공장 평면도, 제품 설명서, 생산·가공기술 프로세스도, 가공기술 설명서, 생산경영과정 중 집행에 관한 법률·법규, 기술규범명세서, 제품 집행 표준목록 등이다.
 - 또한, 생산·가공 주요설비목록 및 검사설비목록, 생우유 공급 및 기업 가공능력 현황 및 최대집적영역 반경에 관한 설명, 위탁가공 현황, 최근 1년 내 품질감독관리, 산업주관부문의 제품검사실시보고서 사본 혹은 부합되는 제품의 증명자료, 법률 및 규정 준수 서약서, 인증기관 요건·제공자료 진실에 관한 서약서 및 기타 문건을 구비해야 한다.

31) 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发布, 2009, “乳制品生产企业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实施规则(试行).”

- 인증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인증 현장실사 ■

직원수	현장실사일수(1차)	현장실사일수(팔로우업)
100명 이하	4일	2일
100-200명	5일	3일
200명 이하	6일	4일

출처: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2009. “乳製品生產企業危害分析與關鍵控制點(HACCP) 體系證認實施規則(試行).”

- ‘유제품생산기업 HACCP 체계인증’의 인증절차는 앞서 언급한 기타 인증제도의 취득 절차와 유사하다.
 - 수입신고 준비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포장운송위생, 미생물, 오염 등 수치 부합 여부에 대해 검사·검역을 한다. 이때 중국어 라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샘플링 테스트 및 라벨의 영양성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테스트한다.
 - 검사·검역이 완료되면 위생증명서가 발급되고, 위생증서를 취득, 제품을 수령한다.
 - 인증마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기업 가운데 유제품 생산 인증을 취득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5월 1일 중국품질총국이 ‘수입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첫 명단’을 발표했으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미국 등 16개국의 4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 중 우리 기업은 매일유업 평택공장, 롯데 파스퇴르 공장, 남양 세종공장 세 곳이다.
- 2014년 4월 30일에 발표된 ‘영유아 유제품 생산기업 명단’에도 매일유업 평택공장, 롯데 파스퇴르 공장, 남양 세종공장이 포함되었다.
- 일반유제품 생산업체로는 롯데 파스퇴르 공장, 빙그레 도농·김해 공장, 삼양식품, 매일유업 광주·상하공장, 동원산업 강진·정읍 공장 등 총 39개가 선정되었다³²⁾.

32) <중국 내 등록된 한국 유제품(조제분유 제외) 생산기업 명단(韩国乳品(婴幼儿配方乳品除外)生产企业在华注册名单)> (2014년4월30일 갱신).

- 앞서 언급된 중국 내 멜라민 파동 등 각종 식품안전문제로 인해 외국산 우유, 유제품, 분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한국산 유제품 및 분유가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 따라서 마케팅 전략 및 제품 다각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식품과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구별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한·중은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인증을 획득하였더라도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중국의 인증제도를 취득해야 한다.
 - 식품안전 및 유통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관련 인증제도를 숙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중국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유제품생산 GMP와 유제품생산기업 HACCP의 주요 차이를 인지하여 어떤 인증 획득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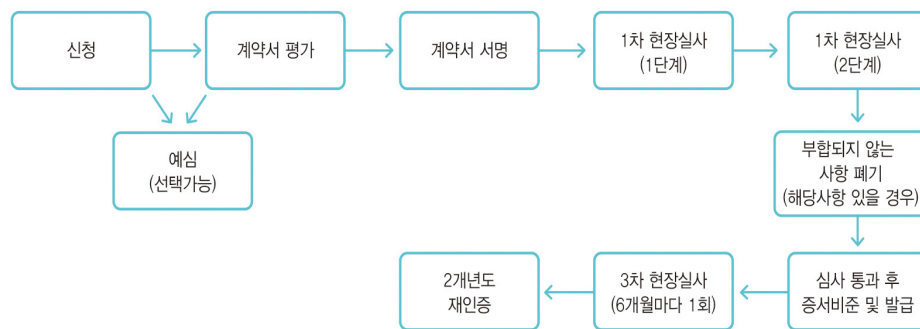
4) GMP와 유제품 GMP

- ◆ **중국은 유제품 GMP를 별도로 제정하고 유제품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제품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일컫으며, 중국에서는 ‘우수생산규범’이라 지칭한다. 이는 ‘품질 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이자 식품 및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규이다³³⁾.
 - 유제품 GMP는 기존의 GB 12693-1990, GB 12693-2003 <유제품기업 우수생산규범> 및 GB/T 21692-2008 <분유위생조작규범>을 GB 12693-2010 <식품안전 국가표준 유제품우수생산규범>으로 대체하였다.

33) 이승현, 2014. “매일유업 평택 분유공장 ‘중국 GMP 인증.’ 이데일리 2014년 3월 17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043446606024304&DCD=A00302&OutLnkChk=Y> (검색일: 2014.9.20).

- 기존의 <유제품기업 우수생산규범>이라는 명칭에서 ‘기업’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유제품 우수생산규범>으로 변경, 활용범위가 조정되었고 부문별 유제품 기업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 유제품 GMP는 우유(양 우유 포함) 및 가공제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유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 설비, 위생관리, 원료 및 포장재, 생산과정의 식품안전 규제 및 검사, 제품의 보존 및 운송, 제품 리콜제도, 교육, 관리기구 및 인원, 기록 및 문서 관리 등이 포함된다.
- 신청인은 국가 공상행정부문 혹은 유관기관에 법인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규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정허가문서와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에 부합되는 제품표준을 획득해야 한다.
- 생산·취급하는 제품은 중국의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유관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GB 12693 <유제품기업 생산규범>에 따라 GMP를 실시해야 한다.
- 인증절차는 다른 인증제도 및 증서 취득과 비슷하나, 1차 현장실사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사실상 1·2차 현장실사 후, 3차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현장실사는 생산기업 규모에 따라 소요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인증마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유제품 GMP 인증 절차 ■



출처: Intertek, N.d. “乳制品GMP良好生产规范”

http://www.intertek.com.cn/Uploadfile/Publicize/DairyProGMP_CN.pdf (검색일: 2014.9.22)



■ 유제품 생산기업 GMP 인증 현장실사 소요일수 ■

직원수	소요일수(1차)	소요일수(2차)
100명 이하	3일	1.5일
100~200명	4일	2일
200명 이하	5일	3일

출처: 中國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2009. “乳製品生產企業良好生產規範 (GMP) 認證實施規則(試行).” 이 표의 기준은 GMP 생산 작업장 1곳을 대상으로 함.

-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국가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식품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관련 인증 취득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이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4년 3월 매일유업 평택공장이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중국 GMP 인증기준을 획득한 데³⁴⁾ 이어, 롯데푸드도 2014년 5월 GMP 인증을 마쳤다³⁵⁾. GMP 인증 획득에 앞서, 매일유업은 국내 업계 최초로 2007년 조제분유 품목 관련 HACCP 인증을, 2008년에는 ISO22000 인증을 받았다³⁶⁾.

■ 유제품생산 GMP와 유제품생산기업 HACCP의 주요 내용 비교³⁷⁾ ■

	유제품 GMP	유제품 생산기업 HACCP
신청방법	해당지역의 중국 국가검험인증집단에 관련서류 제출	
유효기간	2년(6개월마다 심사·결정)	2년(1년마다 심사·결정)

출처: 중국품질인증센터. 2012. “乳製品认证常见问题.”
<http://www.cqc.com.cn/chinese/txrz/haccp/cjwt/webinfo/2006/07/1260325221626032.htm>
 (검색일: 2014.9.11).

34) 이승현. 2014.

35)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4. “롯데푸드.” 2014년 6월 17일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36) 이승현. 2014.

37) 관련 내용 업데이트는 <http://food.cnca.cn>를 참고할 수 있다.

3. 일본의 식품 관련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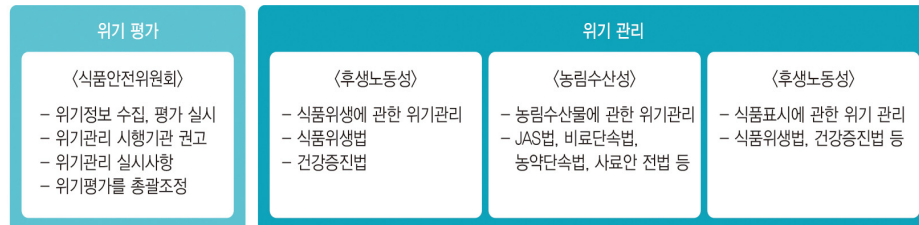
가. 일본 농식품 인증제도의 특징

1)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 일본의 농식품 안전 관리는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소비자청이 담당하고 있다.

- 2003년 7월 1일 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의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식품안전위원회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체제로 인해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유제품 GMP 인증 절차 ■



출처: 厚生労働省(2013.3). 「食品の安全確保に向けた取組」. p. 4.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주로 안전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농림수산성은 생산과정의 안전(위기)관리를, 후생노동성은 수입, 유통 및 소비단계의 안전(위기)관리를 담당한다.
- 내각부 외국(外局)으로 2009년 9월 11일 발족한 소비자청은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식품표시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2) 농식품 안전관리 제도 강화

● **일본정부는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 2010년 4월 ‘농업생산공정관리(GAP)의 공통기반에 관한 지침’ 이, 2013년 6월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HACCP 지원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11월에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감소 지침’과 ‘생산위생관리 지침’이 발표되었다.

● **일본정부는 농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과 유해미생물을 위기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업계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 식품 관련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감소 지침(2013년 11월)’이 마련되었다.³⁸⁾
- 닭고기, 쇠고기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현장에서 유해미생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위생관리 지침’이 2013년 11월 개정되었다.

● **일본정부는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품질향상, 농업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공정관리(JGAP)³⁹⁾ 인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 JGAP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 퇴비, 수질, 토양, 방사능 관리 측면에서 120개 이상의 기준을 정하고, 제3자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하는 농장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러나 JGAP 인증제도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제도로 운용되고, 인증기준이 관리 주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자·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일본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쌀, 보리, 과수, 콩, 화훼 등에 대한 ‘GAP 공통적 기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농가에 토양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38) 아크릴아마이드는 120℃를 넘는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다.

39) JGAP은 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임.

- 일본GAP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JGAP 인증을 받은 농장수는 2008년 238개에서 2014년 1,81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일본정부는 HACCP 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세제 우대 조치, 저리융자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 HACCP⁴⁰⁾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해당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시점(critical control point)을 설정, 과학적·체계적으로 농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HACCP 방식은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불량제품 출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이에 일본정부는 농식품 산업에서 HACCP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위생 관리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HACCP 지원법을 개정하였다.
 - 농식품 산업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적극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HACCP 지원법은 융자지원 대상을 시설정비 자금 뿐만 아니라 위생·품질관리기반정비 자금으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 HACCP 인증제도가 지자체, 관련 업계 주도로 도입된 이후,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개 업종(우유·유제품, 육류가공제품, 용기포장 살균식품, 어육연제품,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433개 시설(779건)이 인증을 받았다.

40)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3) 식품표시제도 통합 추진

◆ 일본의 농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에 기초하며, 각각 별도의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일본의 식품표시제도는 지금까지 JAS법(품질에 관한 적정표시), 식품위생법(식품 안전 및 위생), 건강증진법(국민건강 증진)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일본의 농식품 표시 관련 법 ■

	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	JAS법 (농림수산성)	건강증진법 (후생노동성)
목적	음식에 기인하는 위생상 문제 발생 방지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적정 표시	영양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
표시 취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에 관한 공중위생상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제조업자는 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농림물자 품질 표시	판매자, 수입업자는 판매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표시
표시 내용	표시기준에 따른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알레르기 대상물질, 소비기한, 보존방법 등을 표시	원재료명, 소비기한, 보존방법, 원산국, 원료원산지, 제조업자 등을 표시	영양성분(단백질, 나트륨 등)의 양과 열량 및 표시방법을 표시

출처: 消費者廳(2013). 「食品表示法説明資料」 pp. 3~4.

◆ 일본의 식품표시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률마다 용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선을 야기한다.

- 복수 법률에 근거한 식품표시제도는 첨가물표시, 원재료표시, 유전자전환 식품표시, 원재료원산지 표시의무화 등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표시대상 항목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식품표시에 대한 복잡한 기준의 통합과 포괄적인 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3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표시법을 2013년 6월 28일 공포하고, 이를 2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 식품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표시 공동회의’가 2002~09년에 45차례 개최되었다.
- 일본정부는 2009년에 소비자청을 발족하고 2013년에는 소비자청이 식품표시제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였다.

■ 일본의 식품표시법 추진과정 ■

연도	식품표시법 추진과정
1947년	식품위생법 제정(후생성)
1950년	JAS법(농림물자 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 법률)(농수성)
1970년	JAS법에서 품질표시기준제도를 창설
1989년	식품위생법을 토대로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1991년	건강증진법을 토대로 특정보건용식품표시제 창설(후생노동성)
1999년	JAS 법 개정에 의해 모든 음식료품에 품질표시 의무화
2002년	건강증진법 제정, ‘식품표시 공동회의’를 개최 (2009.9월까지 45회 개최)
2009년	소비자청 발족,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하여 관리
2011년	소비자청 ‘영양성분 표시 일원화 검토회’ 정리
2013년	식품표시법안 성립

출처: 森田満樹(2013.6.22). 「食品表示法成立」食品表示行政のこれまでと今後の課題」. p.1

나. 인증제도 효과

● **농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농식품 인증제도는 생산자소비자 측면에서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 GAP 인증 및 HACCP 인증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생산자가 협회 위주로 자발적으로 관련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 생산자에서 인증제도는 고품질 농산물 공급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증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 차별화와 신뢰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게 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GAP 인증 및 HACCP 인증 제도는 농약·화학비료를 줄여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한다.
-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농식품 인증제도는 해외 농산물의 일본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와 특징

● 일본 농식품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 인증제도와 협회 주도의 자율적 인증제도로 구분되고 그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 정부주도의 식품 인증제도는 농림수산성이 부여하는 JAS 규격과 소비자청이 부여하는 특별용도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 협회주도의 자율적 인증제도는 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협회의 냉동식품인정마크, 전국음용우유 공정거래협회의 음료용 우유 공정마크, 전국 로얄제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로얄제리 공정마크, 재단법인 일본곡물검정협회의 쌀 정보제공 마크 등 개별 품목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 일본 농식품 인증마크의 종류와 특징 ■

인증마크	명칭	특징
	J A S 마크	농림수산성이 색과 향기,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성분, 성능, 품질 기준에 충족한 식품에 부여
	특정 J A S 마크	농림수산성이 특별한 생산, 제조방법에 대한 JAS 규격을 충족한 식품에 부여

인증마크	명칭	특징
	유기 JAS 마크	농림수산성이 유기JAS 규격을 충족한 농산물에 부여
	생산정보표시 JAS 마크	농림수산성의 생산정보(생산자 이름, 주소, 농장 소재지, 사료정보, 동물용 의약품 사용정보, 비료·농약상황 등)에 대한 기준 표시
	정온 관리 유통 JAS 마크	농림수산성이 유통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유통시킨 식품에 부여
	특정보건용 식품허가증표 마크	소비자청이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등 유지 및 특정 보건 용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품에 부여
	특별용도 식품마크	소비자청이 유아, 환자, 임산부 등 건강유지 및 회복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 용도에 대한 표시허가를 받은 식품에 부여
	JHFA 마크	공익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가 65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의 규격기준을 설정, 성분 및 표시 내용을 심사하여 인정받은 건강보조식품에 부여
	총합위생관리 (HACCP) 후생노동성 승인마크	후생노동대신이 승인한 '총합위생관리과정(HACCP 시스템)'에 의해 위생관리가 시행된 공장에서 제조된 식품에 부여
	SQ마크	사단법인 과자종합기술 센터가 과자류 안전과 품질보증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상품에 표시
	냉동식품 인정마크	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협회가 규정한 품질과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의 냉동식품에 표시
	음료용 우유 공정마크	전국음용우유공정거래협회가 우유 및 유제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하여 적정한 표시를 하고 있는가를 인정하여 상품에 표시
	생면 공정 마크	전국생면후생거래협회가 「생면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표시 여부를 인정하여 회원 상품(우동, 메밀, 생라면, 생마카로니 등)에 표시
	햄·소시지류 공정마크	햄·소시지공정거래협회가 「햄·소시지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적정한 표시 여부를 인정하여 상품에 표시



인증마크	명칭	특징
	로얄제리 공정마크	사단법인 전국로얄제리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상품(로얄제리 원액, 건조 로얄제리, 조정 로얄제리)에 대해 표시
	커피 공정마크	일본커피공정거래협의회가 「레귤러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거, 적정한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상품에 표시
	쌀 정보제공 마크	재단법인 일본곡물검정협회가 식감, 상표 표시, 안전성에 대해 분석 시행, 그 결과를 표시
	J P A 마크	일본 브레드믹스 협회가 규정한 표시기준에 따라 생산된 회원의 브레드믹스(핫케익, 케익 믹스, 튀김가루, 쿠키 믹스 등의 분말)에 표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마크	일본간병식품협의회가 규정한 규격 구분에 따라 표시된 회원의 간병용 가공식품에 표시

출처: 橿原市 홈페이지(<http://www.city.kashihara.nara.jp/syouhi/kurasi.htm#mark>).

라. 일본의 인증체계 및 인증절차

1) 농림수산성의 JAS 제도

◆ 일본의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제도는 JAS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 일본은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에 기초하여 식품 및 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 JAS 제도는 합리적인 농림수산물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농림수산물의 품질개선·생산 합리화·거래 공정화·소비 합리화를 도모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JAS법 제1조 규정).
- JAS법에서의 농림물자는 주류, 의약품 등을 제외한 ① 음식료품 및 기름 ② 농림 축수산물 원료 및 이를 제조·가공한 물자로 규정된다.

● JAS 제도는 JAS 규격제도(임의규정)와 품질표시 기준제도(의무규정) 두 가지로 구분되며, JAS 규격제도는 선택적으로 제조업자 판단에 의해 활용되는 반면, 품질표시 기준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JAS 규격제도는 농림수산성장관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JAS 규격) 기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 품질표시 기준제도는 일반 소비자가 농림수산물 선택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조 혹은 판매업자가 농림수산성 장관이 제정한 품질표시기준에 맞추어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 JAS 제도 개요 ■



출처: 농림수산성(2012. 6). 「有機農産物検査認証制度ハンドブック(改訂 第5版)」. p. 2.

● JAS 규격은 크게 품질, 생산방법, 유통방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5년 마다 개정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 품질 JAS 규격은 색과 향기,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성분, 성능 등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며, 2013년 3월 현재 66개 품목에 대해 214개 규격이 제정되었다.



- 생산방법 JAS 규격은 특정 제품의 생산방법, 유기생산방법, 생산정보공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013년 3월 기준 14개 품목에 대해 16개 규격이 제정되었다.
 - 이 중 유기생산방법 JAS 인증을 취득한 유기농산물을 JAS 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가진 국가(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EU)로 수출시, 2013년 7월부터 일본에서 취득한 유기JAS 인증마크를 첨부할 수 있게 되었다.
- 2005년에 제정된 유통방법 규격은 현재 '정온관리 유통가공식품'에 대해 1개의 JAS 규격이 제정됨.

【 JAS 규격 종류 및 내용 】

JAS 마크 종류	설명	규격제정 품목	
품질 JAS 규격 	색과 향기,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 의 성분, 성능, 품질에 대한 기준	- 즉석 면류 - 간장 - 과실음료 - 합판 등 51개 품목	
생산 방법 JAS 규격 	숙성(숙성 햄), 사육(닭고기) 등 특별한 생산 제조방법, 특색 있는 원재료(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 숙성 햄, 소시지 - 숙성 베이컨 - 토종닭 - 수타 국수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된 농산물, 유기 JAS 규격을 충족한 식품에 부여, 이런 JAS 마크를 부착한 식품은 '유기 ○○'라고 표시 가능	- 유기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 유기축산물 - 유기사료
		생산자가 자주적으로 생산정보(생산자 이름, 주소, 농장 소재지, 사료정보, 동물용 의약품 사용정보, 비료·농약상황 등) 표시	- 쇠고기 - 돼지고기 - 농산물 - 가공식품(두부 등)
유통 방법 JAS 규격 	유통방법에 대한 기준	- 유통 농산물 - 유통 식품	

출처: 농림수산성(2012.6). 「有機農産物検査認証制度ハンドブック(改訂第5版)」,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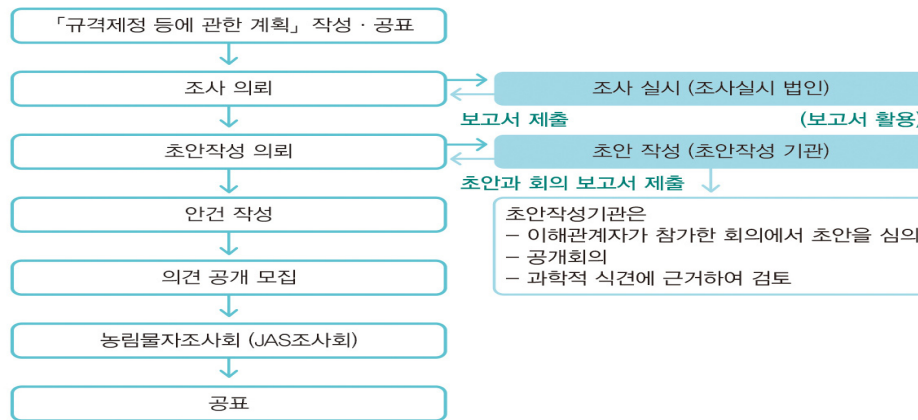
● **품질표시 규격제도는 제조업자들이 모든 음식료품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며, ‘신선식품 품질표시’와 ‘가공식품 품질표시’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은 야채, 과일 등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가공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명칭’과 ‘원산지’ 두 가지에 대한 표시가 의무로 규정된다.
 - 추가로 세 가지 품목 기준(현미 등 쌀 정제 품질 표시기준, 수산물 품질 표시기준, 표고버섯 품질 표시기준)이 마련되었다.
- 가공식품 표시기준은 신선 농산물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제조된 식품(술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명칭’,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로 규정된다.
 - 46개 품목별(채소 냉동식품, 장어 가공식품, 소시지 등)로 품질 표시기준이 마련되었다.

● **일본 정부는 수요변화와 규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JAS 규격에 대해 5년마다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 JAS 규격은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농림물자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생산자·수요자·유식자로 구성된 ‘농림물자규격조사회(JAS 조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JAS 규격은 일반적으로 ① 적용범위 ② 정의 ③ 기준 ④ 측정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 JAS 규격 검토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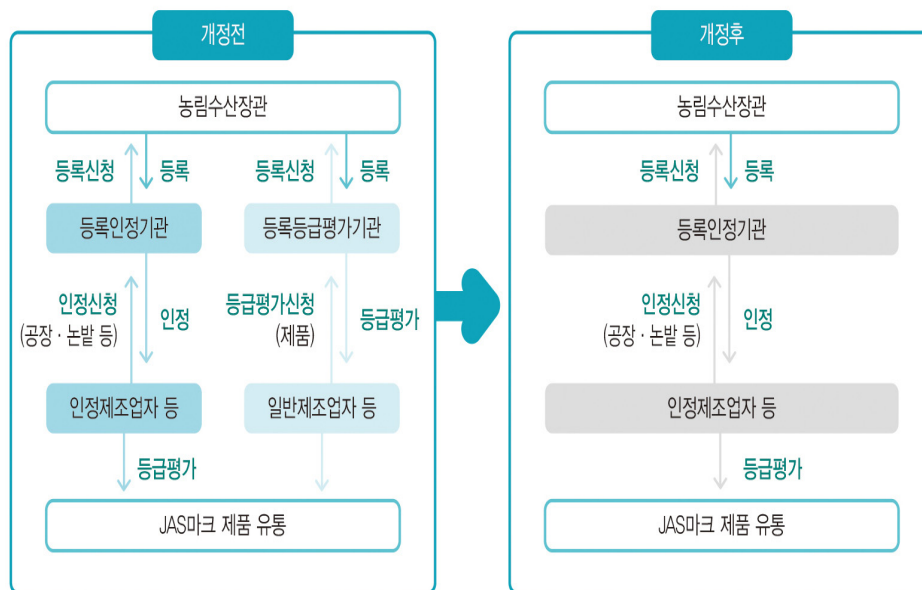


출처: 농림수산성(2012.6). 「有機農産物検査認証制度ハンドブック(改訂第5版)」. p. 4.

◆ JAS 인증절차는 2006년 3월 JAS법 개정을 통해 등록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가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로 통합되었다.

-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이 인정사업자(제조·수입·유통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면, 인증획득자는 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다.
- 인정사업자는 농림수산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3자 기관인 등록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시설 및 품질관리 상황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 등록인증기관은 JAS 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농림수산장관의 인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성은 JAS법에 근거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에 맡기고 있다.
- 2014년 현재 등록인증기관이 98개 있으며, 외국등록인증기관은 28개 있다⁴¹⁾.

■ JAS 인증 절차 ■



출처: 농림수산성(2008.3). 「改正JAS法について」. p.5.

41) 農林水産省 홈페이지(http://www.maff.go.jp/j/jas/jas_kikaku/kikan_itiran.html)를 참조하여 작성.

2) 소비자청의 특정보건용식품 및 특별용도식품 인증

◆ 특정보건용식품은 건강증진법에 기초하여 소비자청의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보건용식품은 신체의 생리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특정 성분을 포함한 식품으로, 유효성, 안전성, 품질 등 과학적 근거 표시여부를 소비자청이 심사·평가하여 허가받은 식품을 말한다.
 - 보건용도 표시 사례로는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복통 완화’, ‘식후 혈중 중성지방 상승억제’ 등을 들 수 있다.
- 특정보건용식품은 3가지 기준(규격기준형, 질병위험 감소표시유형, 조건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14년 9월 3일 기준 1,118개 품목이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대상이다.

┃ 특정보건용 식품의 종류 및 내용 ┃

종류	식품의 내용
특정보건용식품 (규격기준형)	- 특정보건용 식품 중 허가 실적이 충분하며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규격 기준에 의해 허가
특정보건용식품 (질병위험 감소표시형)	-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감소효과가 의학·영양학적으로 확실한 경우, 질병위험 감소 특정보건용식품 표시를 허가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가 특정보건용식품 수준에 미달하지만 일정한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에 대한 제한적인 과학적 근거를 표시한 조건부로 허가

출처: 日本健康·栄養食品協會 홈페이지 (<http://www.jhnfa.org/tokuho-0.html>)

◆ 특정보건용식품 인증은 다음과 같은 개별 심사절차를 거쳐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자가 소비자청 식품표시과에 심사를 의뢰하면, ①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및 소비자위원회의 의견 및 ② 약사법에 의한 표시 규제 저촉 유무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의견을 청취하고 ③ 국립건강·영양연구소 또는 등록시험기관이 관여 성분량을 분석하여 ④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청장관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허가를 위한 심사는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및 등록시험기관(2010년 3월 16일 기준 5개)이 실시하고 있다.
-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신청 수수료는 9,800엔(전자신청은 7,600엔)이고 허가를 위한 시험수수료는 431,000엔이다.

◆ **특별용도식품은 정상적인 영양섭취가 어렵거나 특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청의 허가가 필요한 식품을 일컫는다.**

- 특별용도식품은 환자용, 임신부용, 유아용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발육·건강유지·회복 등 특별 용도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한 식품으로 규정된다.
- 특별용도식품 마크가 부착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을 토대로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4년 4월 기준 55개 품목이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특별용도식품 중 환자용식품의 경우 허가 기준형과 개별 평가형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허가기준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심사하고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개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 특별용도식품의 종류 및 허가건수 ■

식 품 종 류			표시허가건수	
특별 용도 식품	환자용 식품	허가 기준형	저단백질 식품	11
			알레르겐 제거 식품	6
			무유당 식품	5
			종합영양식품	1
		개별 평가형	8	
		임산부, 수유부 전용 분유	1	
		유아용 조제분유	11	
		식품 흡수가 곤란한 대상자 식품	12	
합계			55	

출처: 消費者廳 홈페이지 (<http://www.caa.go.jp/foods/pdf/syokuhin1194.pdf>)

3)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의 건강보조식품 인증마크(JHFA)

◆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격 설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 공익재단법인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는 2014년 4월 30일 기준 65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성분 및 표시 내용을 심사하여 인정받은 건강보조식품에 JHFA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⁴²⁾.
- 다양한 건강 및 기능성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JHFA 인증마크 취득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 건강보조식품의 JHFA 인증마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규 회원 기준 30,000엔(갱신 20,000엔)이며, 표시 수수료는 희망 소매가격과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42) JHFA는 Japan Health Food Authourization의 약자임.



4.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

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제도(SNI: Standardi Nasional Indonesia)

1) 법적요건

● 인도네시아 정부령 2000년 102호(PP No. 102 Year 2000)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SNI 강제인증리스트 내 품목 수입 및 생산시 인증심사를 필요로 하며 최근 SNI인증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 2013년 산업부장관령 4호에서 수입업자 및 법인이 SNI 강제인증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 및 생산시, SNI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상반기에만 SNI 강제인증품목 리스트에 농업, 식·음료, 전자, 철강,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 112개 품목을 추가했다는 사실은 SNI인증제도 적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5년 WTO 가입이후, 국제표준에 따른 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해 국가표준인증제도인 SNI를 설계한 바 있다.

- 현재 운영되는 SNI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국가표준인증제도로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되었다.
-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 강제인증 품목과 △ 자발적 인증품목으로 구분되며 강제인증 품목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 2014년 4월 기준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3) 인증기관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이 국가표준관련 정책수립, 유관기관 감독, SNI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 1997년 대통령령 22호(PerPem No.22 Year 1997)에 따라 설립되었다.
- BSN은 국가인증위원회(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와 측정단위에 대한 국가표준위원회(KSNSU: Komite Standar Nasional untuk Setuan Ukuran)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KAN은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수행 기관인 제품증명기관(LSPro; Lembaga Sertifikas Product)을 평가하는 하부 기관이다.
 - LSPro는 국내외 기업에서 SNI 인증심사요청을 접수받고 샘플 검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인증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약 35개 기관이 BSN에 의해 지정되었다.
 - KSNSU는 측정 단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SNI에 미포함된 측정단위에 대해 BSN에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BSN 기능별 조직도 ■



출처: BSN 홈페이지(<http://www.bsn.or.i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SNI 취득의 혜택

- ◆ ‘BSN Strategy 2006–2009’에 따르면 SNI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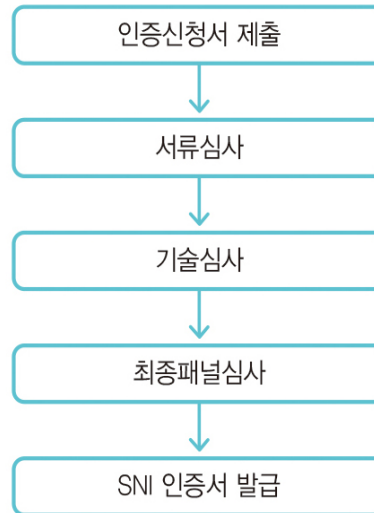
 -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도출을 용이하게 한다.
 -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되므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다.
- ◆ 다른 한편으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SNI 강제품목리스트를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의 수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SNI를 취득하여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인증 취득 절차

- ◆ SNI 인증서 발급 절차는 ① SNI 인증 신청 ② 서류심사 ③ 기술심사 ④ 최종 패널 심사로 구성된다.

 - (SNI 인증 신청) LSPro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도 제출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나 인도네시아 수입업체(현지법인이 없을 경우, 기업에서 지정)만 SNI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 (서류심사) LSPro에서 구비 서류를 검토한다.
 - <http://lspro.depperin.go.id>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한다.

■ SNI 인증서 발급 절차 ■



출처: LSPro홈페이지(<http://LSPro.depperin.go.id>)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 (기술심사) 샘플 테스트와 공장 실사를 진행한다.
 - 샘플테스트 검사관 1인과 2~3인의 공장 실사 담당관을 통해 SNI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 해당 품목이 ISO 9000인증을 보유한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국제표준인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 (최종 패널 심사) 의장 1인과 7인의 패널이 서류심사와 기술심사를 바탕으로 SNI 인증 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 (SNI 인증 발급) 모든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해당 LSPso는 신청기업에 SNI 인증을 발급한다.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을 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소요 기간 및 비용) SNI 인증 발급에는 2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은 총 1,500달러, 외국기업은 총 5,500달러이다.



나. 기타 식품관련 인증제도

1)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제도

- (개요) 인도네시아로 식품 수출시, 할랄인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할랄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축산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축산법 2009년 제 18호에 의거하여 할랄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MUI(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율법학자위원회) 산하 LPPOM MUI(Li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에서 할랄인증을 담당한다.

 - LPPOM MUI는 중앙기관과 33개의 지역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PPOM MUI에서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 기관에서 할랄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기관인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으로부터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가 해외할랄 인증기관이라고 인정받은 바 있다.
- (할랄인증 절차) 할랄인증 등록은 사전검사, 검사절차, 사후검사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사전검사)는 등록신청과 할랄인증 계약 단계를 의미한다.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제품 재료, 제품시설, 조리법 등을 검사하는 단계와 할랄정책, 할랄 관련 인사 등의 할랄인증 시스템 검정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 (사후검사) 검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재료 교체 시에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대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인증 여부에 민감한 무슬람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품시장 진출 시 할랄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입식품등록제도(ML: Makanan Luas)

● (개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가공식품은 식약청(BPOM)에 제품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예외품목은 ①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② 정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되는 가공식품 ③ BPOM에 등록된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이다.
- ML 취득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임시 ML을 발급받기도 한다.
-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소비자보호법(1999)이 적용되어 수입식품의 제품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절차도 더욱 복잡해졌다.

● (발급 절차) ML 취득을 위한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 제품도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함.

- (요구 서류) 식품의 견본, 라벨 및 소개문, 인도네시아의 사업면허, 생산 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제품등록서, 수입업자 정보, 식품 일반정보, 제품 성분 및 품질 설명서, 생산공정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시험 검사) 서류 접수 후, BPOM이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를 진행하고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한다.
 -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5만~250만 루피아(약 4.2~207달러) 수준이다.
- (결과통보)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등록이 승인/조건부 승인/거부로 구분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5. 주요국 인증제도의 시사점

- ◆ **중국이 유제품 관련 규정과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제품 품질 분야에서 문제가 없었던 우리 기업이 체계적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진출을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에 유의해야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벌크분유를 수입하여 중국 내 소포장 가공판매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산 유아 조제분유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증분으로 된 라벨을 최종 판매용 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한다는 점 등 우리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에 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⁴³⁾.
 - 또한, 외국 분유 제조업체는 중국 현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준비한 후 판매 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중국 분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이 최근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중국 현지기업과의 합작, 합자 등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 ◆ **최근 일본도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농식품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식품 업체가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일본의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 외국기업이 일본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시간적·비용적으로 매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상사가 인증을 대리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⁴⁾.

43) 김명신. 2013. "중국 분유업계 M&A로 달라질 시장판도." KOTRA. 2013년 6월 25일.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4078 (검색일: 2014.9.25).

44) 김광수. 2010. 「일본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오사카 KBC 시장정보 자료.

- 한국과 제도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출에 실패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한국은 건강기능식품 원재료가 허가 대상인 반면, 일본은 제품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지표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부원료 및 제품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제품마다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일본에서 협회 주도로 추진되는 다양한 자발적 인증제도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고, 사업자 및 협회 주도 하에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 유통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일본 소비자들이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마크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의 농식품에 대한 강제적 규제뿐만 아니라 협회주도의 임의적·자율적 규제도 우리기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 식품기업이 직접 일본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민간 차원의 인증제도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투명성 확보, 자발적 규제에 대한 상호인정 등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비하여 SNI 강제품목리스트 확대 및 기타 인증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SNI를 비롯한 할랄인증, 수입식품등록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함으로써 비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을 요약하면 국별로 상이한 인증제도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식품 수출 기업이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도록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공해야 한다.

- 대기업은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기업이 각국의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종업체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중소기업에 주요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주요 수출국 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인증기관 방문단 초청 등을 추진하여 인증제도 변화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있다.
- 각국별로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제3기관이 관여하는 인증제도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농식품 수출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그 규모가 다르고 수출 품목 또한 다양하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국가별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기업 스스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현재 aT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농식품 해외인증제도등록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지원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다.

부록. 중국인증 관련 상담 및 지원안내

사업내용	기관	이용방법 및 주요업무	연락처	위치	홈페이지 및 이메일
TradeSOS 중국인증 상담	중국검험인 증그룹코리 아컴퍼니 (CCIC KOREA, 中国检验认 证集团韩国 有限公司) ⁴⁵⁾	CCC인증, CQC인증, 중국기타인증, 국제인증, 폐기물원료선적전검사, 중고기계선적전검사, automotive	트레이트 콜센터 (1566-5114), 매주 화/금요일 (09:00~18:00)	TradeSOS(회원서비스 센터, 트레이드타워 1층)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상담 → 중국인증 (상담접수 후 24시간 내 회신)
KITA 북경지부 인증관련 지원사업		- 인증대행 업체 추천(자본금 등 고려) - 인증비용 10% 할인(협회 추천시) - 상담예약 및 현지통역 지원 - 컨설팅 및 비용 견적 - 중국의약보건품 수출입상회(북경 소재 CFDA 인증 전문기관) 문의 지원 - 내용 중문번역 및 방문상담 통역 제공	070-8768-1922 ~3		KITA 북경지부 이메일 주소 (bejingk@kita.net)
중소기업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⁴⁶⁾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575),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12)	고부가가치 인증 한국화확융합 시험연구원 02-507-8123	www.exportcenter .go.kr
aT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지원사업 ⁴⁷⁾		지원대상 ⁴⁸⁾ 은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임.	aT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 (02-6300-1442)		www.at.or.kr

주: 굵은 글씨는 농식품에 특화된 부분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certification/counseling.jsp>)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중국품질인증중심(CQC) 한국지사(CQC Korea)는 2004년 개소하였으나 현재는 CCIC KOREA와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4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해외규격인증과 관련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jsp?D_idx=B04&M_idx=4_03) 참고.

47) 해외인증취득 및 연장 소용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다.

48) 이 외에도 HALAL, GOST-R, Kosher, 미 FDA 등의 인증을 지원한다.

II. 국제 금융시장

작성자: 양다영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1. 국제 외환시장

●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회복 및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해 2010년 6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였다가 소폭 조정되었다.

-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ECB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행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지난 2년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유로지역의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3% 상승하여 전월(0.4%)에 비해 상승률이 하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드라기 ECB 총재는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더욱 하락할 경우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10/9).
-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엔화 약세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상승하였다.
 - 아베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엔화 약세로 인해 가계 소비 위축 및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구입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0/7).

●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4.10.17 (현재)	2014.9.17 (1개월전)	2013.10.17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1	85.110	84.345	79.649	0.91%	6.86%
달러/유로	1.2761	1.2865	1.3675	-0.81%	-6.68%
엔/달러	106.88	108.37	97.91	-1.37%	9.16%
위안/달러	6.1240	6.1390	6.0972	-0.24%	0.44%
원/달러	1065.9	1034.9	1063.7	3.00%	0.21%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석유수요 전망 하향 및 세계 원유생산 증가로 지난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 유로지역과 중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14년 및 2015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10/7, 각각 일평균 9,155만 배럴 → 9,147만 배럴, 9,289만 배럴 → 9,271 배럴)
 - 이와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석유시장 보고서(OMR)를 통해 세계 석유수요 증가량 전망을 2014년의 경우 일평균 70만 배럴로 20만 배럴 하향 조정, 2015년은 110만 배럴로 10만 배럴 하향 조정하였다(10/14).
- 반면, 원유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하였다.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MOMR)에 따르면, 9월 OPEC의 원유 생산은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의 생산 증가로 전월에 비해 40만 배럴 증가한 일평균 3,047만 배럴을 기록하였다(10/9).
 - 미국 등 비 OPEC의 원유 생산도 증가하면서 9월 세계 원유 생산은 전월대비 54만 배럴 증가한 일평균 9,233만 배럴을 기록하였다.
 - 향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PEC의 생산량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우위의 상황이 전망된다.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4.10.17 (현재)	2014.9.17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82.98	94.35	-12.05%
Dubai유	83.85	96.46	-13.07%
Brent유	85.68	98.41	-12.94%

출처: Bloomberg.

● **주요 곡물 가격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생산지 기상여건 악화와 기말 재고량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상승하였다.**

- 미 농무부는 10월 세계곡물수급전망(WASDE) 보고서에서 소맥, 대두 등 주요 곡물의 2014/15년도 재고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음(10/10).
 - 2014/15년도 미국의 소맥 기말 재고량 전망치는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료 소비와 수출 증가로 전월의 전망치에 비해 4,400만 부셸 감소한 6억 5,400만 부셸로 나타났으며, 세계 소맥 기말 재고량 전망도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하락하였다(196억 3,800만 톤 → 192억 5,900만 톤)
 - 대두 재고량의 경우에도 2014/15년도에 4억 5,000만 부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월의 전망치(4억 7,500만 부셸)를 하회하였다.
 - 반면,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 전망치는 소비 및 수출 전망치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 전월에 비해 7,900만 부셸 상향 조정된 20억 8,100만 부셸로 나타났다.
- 또한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상악화로 옥수수 수확 및 겨울밀 파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 호우와 폭풍우 확산으로 인해 옥수수 수확이 10월 12일 기준으로 24% 완료되어 평균 수준인 43%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4.10.17 (현재)	2014.9.17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16.00	499.25	3.36%
옥수수	348.00	341.75	1.83%
대두	951.75	982.50	-3.13%

주 : 근월물(최근 선물) 기준

출처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Ⅲ. 최근 주요국의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작성자: 박지현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1.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 미국, 수입쌀 등 농식품 잔류농약 한계치 WTO에 통보(2014. 6. 18)⁴⁹⁾

- 미국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에 따라 농식품의 잔류농약 허용 한계치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2014년 6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이 제정될 때마다 이를 WTO에 통보하고 있다.

■ 미국 주요 농식품의 잔류농약 한계치 규정 ■

품목	농약	Parts per million (ppm)	발효일자
쌀	Tricyclazole	3.0	2014. 6. 11.
citrus(oil)	Spirodiclofen	35	2014. 6. 11.
아몬드	Flutriafol	0.6	2014. 6. 6.
바나나	Flutriafol	0.3	2014. 6. 6.
커피(green, bean)	Flutriafol	0.15	2014. 6. 6.
커피(instant)	Flutriafol	0.3	2014. 6. 6.
포도	Flutriafol	1.5	2014. 6. 6.
헤이즐넛	Flutriafol	0.02	2014. 6. 6.
우유	Flutriafol	0.01	2014. 6. 6.
땅콩	Flutriafol	0.09	2014. 6. 6.
대두(seed)	Flutriafol	0.35	2014. 6. 6.
딸기	Flutriafol	1.5	2014. 6. 6.
토마토(paste)	Flutriafol	1.5	2014. 6. 6.
밀(grain)	Flutriafol	0.15	2014. 6. 6.
콘(grain)	Flutriafol	0.01	2014. 6. 6.
sugarcane	Imazapic	0.03	2014. 6. 4.

자료: Federal Register, Volume 79, Number 112, 109, 107

49) G/SPS/N/USA/2679, G/SPS/N/USA/2678, G/SPS/N/USA/2677, G/SPS/N/USA/2673



◆ **대만, 농약 잔류 허용치 기준 개정(2014. 6. 12)⁵⁰⁾**

-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는 2014년 6월 12일 농약 잔류 허용치 기준개정을 공고하였으며, 이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었다.
- 농약 잔류 허용치 기준은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아래 기준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이외에 허용량 미제한 농약과 사용금지 농약도 공고하였다.

┃ 주요 농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치 ┃

농약	품목	최대 잔류 허용치(ppm)
2,4-D	아몬드	0.2
2,4-D	아스파라거스	1
2,6-DIPN	감자	1
Abamectin	복숭아	0.09
Abamectin	배	0.02
Abamectin	차	0.05
Acephate	쌀	0.5
Acequinocyl	사과	0.5
Acetamiprid	오이	0.5
Acetamiprid	포도	1
Acibenzolar-S-methyl	브로콜리	0.6
Acibenzolar-S-methyl	양파	0.1
Acibenzolar-S-methyl	토마토	0.6
Alachlor	콘	0.2
Alachlor	Sugarcane	0.1
Amisulbrom	호박	0.5
Amisulbrom	딸기	2
Azoxystrobin	아보카도	1
Azoxystrobin	바나나	1
Azoxystrobin	체리	1
Azoxystrobin	Coffee bean	0.05
Bendiocarb	쌀	0.2

50)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농약	품목	최대 잔류 허용치(ppm)
Bendiocarb	차	0.05
Bifenazate	포도	1
Bifenazate	오렌지	0.5
Bitertanol	밀	0.05
Boscalid	바나나	0.2
Boscalid	당근	0.5
Boscalid	포도	1
Captan	체리	25
Captan	감자	0.05
Captan	토마토	3
Carbaryl	쌀	0.5
Carbendazim	레몬	5
Carbendazim	망고	2
Chlorantraniliprole	보리	5
Chlorfenapyr	자두	0.5
Clethodim	땅콩	5

자료: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https://consumer.fda.gov.tw>)에서 정리

- 아래 열거된 농약은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농약 잔류 허용량 제한이 면제되었으며, 잔류량 검사가 필요없다.

【 허용량 미제한 농약 】

DL-methionine	Cuprous Oxide
Copper Chelate	Sex pheromone of Spodoptera litura
Tribasic Copper Sulfate	Cupric Hydroxide
Oxytetracycline	Sex pheromone of Spodoptera exiqua
Sulfur	Copper Sulfate
Tetracycline	Cytokinins
Lime & Sulfur	Sodium Nitrophenol
Azadirachtin	Potassium Hydrogen Carbonate
n-Decanol	Calcium Carbonate
Nonylphenol Coppersulfonate	Validamycin A



CITCOP	Streptomycin
Fatty alcohols	Petroleum Oils
Blasticidin-S	Bacillus thuringiensis
Polyoxins	Copper Oxychloride
Bacillus subtilis	IBA
Riboflavin	NAA, sodium salt

자료: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https://consumer.fda.gov.tw>)에서 정리

- 아래 열거된 농약은 사용 금지된 농약으로 잔류량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 사용금지 농약 ■

ENP	Endrin	Dialifos	Dichloropropene
EDB	Organic mercury	Tetradifon	DDT
DBCP	Binapacryl	Dienochlor	Formothion
TPTH	Benzoximate	Buthiobate	Folpet
TPTA	Chlorobenzilate	Aldicarb	Leptophos
Dinobuton	Chlorophylate	Salithion	Fenchlorphos
PCP-Na	Daminozide	Cycloprate	Pyracarbolid
PCNB	Azocyclotin	smite	Zineb
Carbophenothion	Glyodin	Ditalimfos	Cyhexatin
Conen	Aldrin	Promecarb	Fensulfothion
Captafol	Toxaphene	Cyanazine	BHC
Demephion	Mephosfolan	Aziprotryne	Nitrofen
Dinocap	Heptachlor	Methyl Bromide	γ-BHC (Lindane)
Chlornitrofen, CNP	Etrimfos	Bromophos	
Dieldrin	MNFA (Nissol)	Dinoseb	

자료: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https://consumer.fda.gov.tw>)에서 정리

◆ 일본, 성분 표준에 관한 우유 및 우유제품 시행규칙 개정(2014. 6. 11)⁵¹⁾

- 일본은 우유 및 우유제품에 대한 성분 표준(compositional standards) 개정 내용을 2014년 6월 11일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51) G/SPS/N/JPN/351

- 우유 및 우유제품에 대한 성분 표준은 식품위생법 제11조항 para.1에 기초한 ‘성분 표준에 대한 우유 및 우유제품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비중(specific gravity)’과 같은 성분 표준은 일반우유의 지표로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의 성분 표준과 actual situation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축산 개량, 제조기술 발전, 제품의 다양화 등에 기인한다.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actual situation에 성분 표준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 다음은 우유 및 우유제품에 대한 성분 표준이 개정된 사항이다.

■ 우유 및 우유 제품에 대한 성분 표준 개정안 ■

품목	성분 표준	현행	개정안
생우유, 우유, special milk	비중(taken from cows other than Jersey cows)	1.028-1.034	1.028 이상
	비중(taken from Jersey cows)	1.028-1.036	
저온살균된 산양유	무지방 고품분 우유	8.0% 이상	7.5% 이상
	유지방 우유	3.6% 이상	2.5% 이상
composition modified milk	산도(젖산과 같은)	0.18% 이하	0.21% 이하
저지방우유	비중	1.030-1.036	1.030 이상
탈지유	비중	1.032-1.038	1.032 이상
발효유	젖산 박테리아 수 또는 효모 수	10,000,000 이상	10,000,000 이상 (발효후 열처리 제외)
발효유, 발효유드링크, 우유드링크	열처리 조건	62°C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저온살균 효과 이상 또는 동등하게 가열	보온방법에 의해 63°C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저온살균 효과 이상 또는 동등하게 가열
발효유, 발효유드링크	젖산 박테리아에 대한 측정방법	35~37°C 온도에서 인큐베이터	35~37°C 온도에서 인큐베이터 (또는 발효온도가 약 25°C인 제품에 대해서는 24~26°C 온도에서 인큐베이터)

자료: http://members.wto.org/crattachments/2014/sps/JPN/14_2662_00_e.pdf



2.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 미국, 글루텐 프리(Gluten-Free) 라벨링법 가이드 배포(2014. 6. 25)⁵²⁾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4년 6월 25일 글루텐 프리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목적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루텐 프리⁵³⁾ 라벨링법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하였다.
 - 동 가이드에서 언급된 글루텐 프리의 부정 및 불량 표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글루텐 프리(gluten free)와 밀(wheat)이 영양성분표에 함께 나타날 때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규정에 의하여 ‘밀이 함유되어 있음’이라는 표시를 했지만 여전히 제품이 FDA의 ‘글루텐 프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알림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 글루텐프리, 글루텐 없음, 무글루텐(예: Gluten-Free, no gluten, free of gluten, without gluten)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해당 제품이 글루텐 프리에 관한 FDA 정의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또한 FDA는 자체적으로 과학적이며 입증된 방법을 통해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에 대한 글루텐 함유량을 검사하고, 해당 검사방법을 통해 인증기관의 규정을 검토하며, 추가적으로 발효식품의 글루텐 표시 규정이 FDA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5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53) FDA는 지난 2013년 8월 글루텐 함유량이 20ppm 미만인 제품에만 “글루텐 프리(‘no gluten’, ‘free of gluten,’ or ‘without gluten’)”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발표함.

주요국의 인증제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행일 : 2014. 10.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9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408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